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미국 · 캐나다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연수 -

2017. 12.



보건복지부

차 례

I. 연수 개요	1
II. 방문국가 일반현황	4
1. 미국	4
2. 캐나다	9
III. 방문기관 연수내용	14
1. 미국 버겐카운티	14
2. 미국 뉴욕한인봉사센터	16
3.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20
4. 미국 보건복지부	22
5.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25
IV. 시사점	29
IV. 해외 정책연수 소감 및 정책제안	32

1. 목 적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00년 시행된 이후 '15년 맞춤형급여 개편 및 '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시기에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체계를 구축한 선진 외국의 제도가 시행되어 온 과정과 장·단점에 대한 비교론적 이해를 통해 우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함
 - 특히,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체계를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전달체계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
- 또한 '17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에게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공무원에게 외국제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제도를 다채롭게 이해하도록 하며
 - 외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일선 현장에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

- 방문국가 : 미국, 캐나다
- 연수기간 : 2017. 11. 15. ~ 11. 23. (7박 9일)

3. 주요 일정

- 미국 : 11.15.(수) ~ 11. 17.(금)
 - 버겐카운티 : 11. 15(수)
 - 뉴욕한인봉사센터 : 11. 16(목)
 - 페어팩스카운티 및 보건복지부 : 11. 17(금)
- 캐나다 : 11. 20.(화)
 - 온타리오 주정부 : 11.20(화)

4. 세부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방문목적
11.15(수)	인천 (10:10)	뉴욕 (11:20)	이동	-
	뉴욕	뉴욕	버겐 카운티 (Bergen count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주정부 사회보장제도 현황 파악
11.16(목)	뉴욕	뉴욕	뉴욕한인봉사센터 (KOREAN COMMUNITY SERVICES)	민간전달체계 현황 파악
11.17(금)	뉴욕	워싱턴	페어팩스카운티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주정부 사회보장제도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연방정부 공공부조제도 현황 파악(TANF)
11.18(토)	워싱턴	토론토	연수결과 정리 및	분야별 토론
11.19(일)	토론토	토론토	연수결과 정리 및	분야별 토론
11.20(월)	토론토	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NTARIO)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현황 파악
11.21(화)	토론토	뉴욕	이동	-
11.22(수)	뉴욕 (14:00)	-	이동	
11.23(목)	-	인천 (16:20)	도착	-

5. 참가자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1명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행정주사	박선명
2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행정주사	이현주
3	강원도 춘천시	지방행정주사	노미영
4	경기도 안성시	지방사회복지서기	차필성
5	경기도 안양시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하늘
6	경기도 하남시	사회복지주사	이혜자
7	경상남도 고성군	지방사회복지서기	박거성
8	경상북도	지방사회복지주사	오화선
9	경상북도 경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종숙
10	경상북도 구미시	지방사회복지주사	황은채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은영
12	전라북도 군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류명숙
13	전라북도 무주군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은숙
14	전라북도 순창군	지방사회복지주사	이경화
15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문정심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행정주사	김경혜
1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소영
18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사	배연진
1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사회복지주사	전영미
20	충청남도 청양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복혜란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미

1. 미국 일반현황

□ 개 요

○ 정식명칭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 언어 : 영어	
○ 면적 : 9,833,517km ² (세계3위)	
○ GDP : 19조 3,621억\$ (세계1위)	
○ 수도 : 워싱턴 D.C	
○ 인구 : 326,625,791명 (세계3위)	

○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요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와 선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다양한 대인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로 구성
 -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공공부조제도는 기여와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루어짐.
-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Medicaid)으로 구성
- 공적연금(OASDI)은 노령(Old-Age)연금, 유족(Survivors)연금, 장애(Disability)연금으로 구성되며,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제도에서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현금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일반부조(GA/GR)	
	산재보험	보충적소득보장(SSI)	
현물	노인의료보험(Medicare)	저소득가정에너지보조(Energy Assistance)	고용서비스
		공공주택 및 임대료보조(Public Housing, Subsidized Rental)	직업능력개발사업
		SNAP 등 식품부조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서비스
		학교급식(School Food)	가족상담 및 정신건강
		여성, 유아, 아동식품보조(WIC)	지역사회 모자보건 서비스
		의료부조(Medicaid)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아동건강보험(CHIP)	교정복지서비스 기타서비스(정보, 연계 등)
조세형		근로장려세제(EITC)	

○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지원보다 시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지원 받는 복지가 우선적으로 배치, 전달체계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큼.
- 또한 공적연금(공공복지 내에서 사회보험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과 공공부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큼.
 - 공적연금의 축소는 신중하게 추진되는 반면, 공공부조 수급권 및 지출의 축소는 성공한 것에서도 나타남.
- 미국의 행정체계는 연방제(federalism)를 채택함에 따라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또는 중앙정부)가 하위정부들(주정부, 지방정부)에게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음.
 - 50개의 주는 하나의 연방정부 하에 있지만 각각 별개의 주법을 가지는 독립된 정치 및 행정주체로 역할하고 있고, 주정부 밑에는 다시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있음.

○ 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종류

(1) 공공부조제도

- 분립형 공공부조체계로서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 제도로 분리되어 있어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수준이 다르며, 일부 제도 간에는 급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공공부조 종류

종류	내용	시행
보충적소득보장(SSI)	- 소득이 낮은 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원되는 보충적인 소득보장제도 - 주거, 의류 및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 서비스 - 65세 이상의 노인, 완전 또는 부분 시각 장애인,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나 질병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현금지원 서비스로 근로연계 복지제도 - 18세 이하 또는 19세의 중등학교 정규 과정 등록 학생이 가구원으로 포함되거나, 임신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중 적어도 한명이 부재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연방 보건복지부(DHHS) 산하 아동가족청(ACF)에서 관리 및 시행을 담당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에 참여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로 근로빈곤층 현금지원제도 - 본인과 배우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모두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또는 양육자는 자녀보다 연령이 높아야 함.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에서 운영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에 포함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지원 - 가장 대표적인 선정기준은 장애 유무인데, 일반부조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는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 또는 질병을 수급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를 수급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주, 카운티 또는 지역 기금(local funds)에 의해 의존하는 것은 물론 관리, 운영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의료부조(Medicaid)	-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에서 이를 부담하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기금(matching fund)으로

종류	내용	시행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 소득 기준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연방정부가 공표하는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함	재정을 부담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 주거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ies; PHA)으로 배정하여 이들이 관리를 담당
식품 관련 부조	- 영양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영양 지원제도로 식품구입비를 지원 - 학교급식지원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공립, 사립 학교에 균형잡히고, 저렴한 점심급식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제도 - 임산부 영양지원 프로그램(Women, Infants & Children): 영양학적 위험(Nutritional Risk)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	미국 농림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 사회보험제도 종류

종류	내용	비고
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	노령 · 유족 · 장애연금 프로그램	Old-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
노인의료보험 (Medicare)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이며,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이 4파트 ¹⁾ 로 구성됨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Unemployment Insurance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	Worker's Compensation
기타 특수직역연금	철도노동자연금, 공무원연금	

주: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입원 환자 병원비와 후속 치료 비용 지급, 파트 B(의료 보험)는 의사 서비스, 외래 치료, 그밖에 다른 의료서비스 비용 지급,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많은 지역에서 제공,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개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든 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D(메디케어 처방약 보장)는 처방약 비용 지급

○ 미국의 공공부조 기준선

- 미국 빈곤선은 1963년 미국 사회보장청의 오샨스키(Mollie Orshansky)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969년 공식적인 빈곤선 (official poverty measure, OPM)으로 채택되면서 시작
 - 오샨스키는 영양학적으로 충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초로 삼음. 최저식료품비 (Subsistence food budget)에 특정상수를 곱하며, 매년 빈곤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산출
- ‘미국 빈곤측정에 관한 법안(the Measuring American Poverty Act, MAP Act)’의 2가지 기본 원칙
 - 첫째, 빈곤측정은 의식주 및 기타 기초필수품에 대한 현재 소비패턴을 반영한다는 점을 기초로 삼고, 공적 프로그램(EITC, 식료품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으로부터의 소득 지원은 포함하고, 필수적 비용(연방소득세, 교통비, 현금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제외
 - 둘째, 생계비에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선
 -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s, PT): 미국 통계청에서 공표, 50개 주 단일선으로 설정되며, 빈곤지표 측정(통계적 목적) 등으로 활용
 - ※ 측정방식은 1960년대 오샨스키 빈곤계측방식에 기반, 최초로 설정된 빈곤선×소비자물가상승률(CPI)를 반영하여 조정(빈곤기준선(PT)=최저식료품비×3)
 -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 PG):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수급자격 결정(행정적 목적) 등으로 활용됨.
 - ※ $PG_t = PT_t - 2 \times CPI_t - 1$
 - 보충적 빈곤기준선(Supplemental Poverty Measures Thresholds, SPMT): 미국 통계청에서 빈곤기준선(PT)와 함께 공표
 - ※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식료품비·의복 주거비 및 부대비용×1.2(추가적인 기본욕구 반영)

2. 캐나다 일반현황

□ 개 요

○ 정식명칭 : 캐나다 (Canada)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언어 : 프랑스어, 영어	
○ 면적 : 9,984,670km ² (세계2위)	
○ GDP : 1조 6,403억\$ (세계10위)	
○ 수도 : 오타와	
○ 인구 : 35,623,680명 (세계38위)	

○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개요

- 자선사업과 영국의 빈민구호법에 기초를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예산의 40%정도가 사회복지정책에 투입됨
-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과세로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에 환원하는 “빈부의 균형”과 “공평한 혜택”을 바탕으로
 - 노인, 실업자, 극빈자,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연합하여 세계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
- 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 노년보장연금, 고용보험(실업수당), 근로자보장제도 및 의료보험, 가족수당, 공적부조(Social Welfare)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
- 행정체계는 10개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루어져 있음. 의원내각제를 통치 제도로 하며, 캐나다 연방 정부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연방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연방 하원 내 다수당 대표가 연임.

○ 캐나다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종류

- 캐나다의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빈곤정책의 대상을 전형적인 빈곤층(the poor)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로 다양한 빈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빈곤 프로그램들을 운영

- 소득보장제도

- 노령보장제도,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인 캐나다/퀘벡 연금제도, 자발적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등록제 연금제도와 등록제 개인퇴직저축제도로 구성.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별로 다양한 기준조건을 가지고 사회부조방식의 CST(Canada Social Transfer)를 통해, 소수의 극빈 노인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가 이루어짐.
- 대상자별 지원제도 종류: 저소득층 가구(GST/HST Credit)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단체(CCTB(CTB+NCBS), CSA) / 퇴직자(CPP/QPP, OAS, GIS, SPA) / 직업관련 부상자(WC) / 실직자(EI) / 장기 실업자(SA) / 장애인(DTC) / 개인적 은퇴 준비자(RRSP)

- 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체계)

종류	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
노령보장연금 (Old Age Security Pension)	65세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비기여방식의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18세 이후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완전연금은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며, 부분연금은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40년 미만자에게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보장성소득보조금 (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노령보장연금(OAS)의 완전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	부분연금을 받는 경우, 완전연금과의 차액선에서 지급함.
배우자수당 (Allowance for Spouse)	60세에서 64세인 자 중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배우자와의 연소득합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	
유족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60세에서 64세인 자 중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배우자와 사별한 자로 연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	인적자원사회개발부-사회개발국(HRSDC)을 대행하는 서비스

- 소득비례연금: 캐나다 연금 제도(CPP) 및 퀘백연금제도(QPP: Quebec Pension Plan) - 기여방식의 소득비례제도
 -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60세~64세인 자 중 노동중단테스트(the work cessation test)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자
 - 급여: 퇴직연금, 장애수당, 유족수당(자녀수당), 사망수당
 - 전달체계 : 인적자원사회개발부-사회개발국(HRSDC)을 대행하는 서비스

- 사적연금
 - 퇴직금저축제도(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된 특별저축계획으로 은퇴를 위한 비과세 저축 프로그램으로 RRSP의 계정은행, caisse populaire, 신용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형성됨.
 - 퇴직기금제도(RRIF :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개인이 등록하고 설립하는 은퇴 기금으로, 자산은 RRSP, RPP, 또 다른 RRIF로 전환 가능함.
 - 퇴직연금제도(RPP : Registered pension plan): 퇴직연금제도(RPP)는 고용주가 준비하는 연금으로, 은퇴할 때에 연금이 지급됨.
 - 전달체계: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공적요양제도
 - 연방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제도는 없으며, 각 주, 준주정부에서 조세로 운영되는 공적요양제도가 있음

- 건강보험제도
 -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는 무료. 각 주별로 정해진 의료보험료(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만 납부하면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비용은 처방약 등 극히 일부만 부담

- 공적건강보험인 Medicare와 민간의료보험으로 구성
 - Medicare는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에 따라 각 자치주와 준주가 독립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 캐나다 건강보험의 특징은 조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 주도로 전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제공. 재원은 각 자치주와 준주의 세입과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며, British Columbia, Alberta, Ontario 등 일부 주정부에서는 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보육료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비용지원제도
-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이며, 공공재정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지원됨.
 - 전달체계: 주와 준주정부이며, 인적자원사회개발부-사회개발국(HRSDC)과 공조함.
- 육아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으로 비과세 대상임.
 - 육아보조금은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되며, 아동수당은 다시 기초보조금과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가 연합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아동수당보조금으로 구성됨.
 - 전달체계 :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캐나다의 공공부조 기준선

- 캐나다의 공식빈곤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저소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LICOs, LIMs, MBM을 활용
- LICOs(the Low Income Cut-offs)
 - 저소득가구(가구소득 대부분을 의식주로 지출하는 가구, 가구소득 대비 의식주 지출비용 70% 정도)의 수준을 결정. 통계청의 가구 소비조사(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1992년 재설정된 LICOs를 기본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 LIMs(the Low Income Measures)
 - 노동 및 소득동태조사(the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SLID)를 기반으로 1991년부터 매년 가구규모별 빈곤선(균등화된 가구소득의 중위 50%)을 발표
 - LIMs 빈곤선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에 한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3가지로 압축.
 - 1) 회계단위를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에서 가구(household)로 대체. 2)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변경. 3) 빈곤선 계산시 분석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변경.
- MBM(Market Basket Measure)
 - 1992년 프레이저 연구소(the Fraser Institute)에서 마켓 바스켓을 활용한 빈곤선 측정방법으로부터 시작
 - MBM 빈곤선은 2000년 base에서 2008년 base로 그 기준을 재설정(rebasing)하게 되었으며, MBM은 공식적 빈곤선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연방, 주, 지방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규모와 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1. 버겐카운티(Bergen count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지역특성

- 뉴저지주 내 21개의 카운티 중 하나
- 뉴저지 북동쪽 끝에 위치하였으며 뉴욕 맨하탄과 근접하고 교육, 고소득 등으로 인해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임. 따라서 뉴저지 카운티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1인당 수입도 뉴저지 카운티 중에서 2위임.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약간 큰 정도.
- 맨하탄까지 나가기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 좋은 학군으로 인해서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음. 전체 뉴저지주 한인의 절반 정도가 버겐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음.

○ 기관설명

- 연방법 Older Americans Act에 의하여 1966년 탄생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주민과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 주요사업

- (Care Management)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보호자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 케어매니저는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기 간호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환자들이 양로원에 입소하기 보다는 가능한 오랫동안 본인의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 (Meals on wheels) 장보기나 요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직접 집으로 점심배달

- (Senior Center) Bergen county 정부가 운영하는 10개소의 시니어 센터는 60세 이상의 거주민 모두와 그 배우자, 보호자를 위한 친교 활동, 교육, 세미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점심식사 제공 등으로 운영됨.
-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SHIP)) 뉴저지 정부로부터 교육 받고 자격증을 받은 상담사들이 medicare에 관한개인 상담 실시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HECM)) 전문 상담사가 62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리버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상담, 노년기를 본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

○ 시사점 및 소감

- 이민 국가답게 다양한 국적, 인종의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역, 번역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었음. 특히 한국인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 영어에 취약한 한국 교포들도 프로그램 이용이 용이하였음.
- Care Management(케어 매니지먼트), HECM(주택모기지론 관련 상담 및 교육), Meals on wheels(점심 배달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 본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2. 뉴욕한인봉사센터(KOREAN COMMUNITY SERVICES)

○ 시설개요

-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전문복지관으로 맨하탄, 코로나, 플러싱, 브룩클린 등의 5곳의 장소에서 매일 1,100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기간, 민간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사진 11명, 풀타임 31명, 파트타임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사회복지, 건강, 교육, 이민, 취업 및 정신건강 등에 걸친 30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 건물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기존 KCS커뮤니티센터 매각하고 모금액으로 대지 54,000Ft, 건평 36,000Ft의 현 KCS커뮤니티센터(203-5 32nd Avenue Bayside, NY11361)를 이전 하여 정비중.

○ 주요사업

<노인복지(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회관)>

① 노인주간보호센터

- 사회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경로회관

- 플로싱 경로회관은 2002년, 코로나 경로회관은 2014년 개관
- 영양균형을 맞춤 식사서비스 제공(퀸즈 지역의 식사배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민족음식을 제공)
- 교육 및 오락 활동 ,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 정부혜택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기위한 언어, 사례관리 지원

<교육 및 이민>

① 성인영어프로그램

- 영어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뉴욕의 이민자들에게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 교육 및 추가적으로 컴퓨터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② 이민관련 서비스

- 이민자 중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도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행정절차처리를 지원
- 미국으로 이주하였지만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해 추방당하는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취업자격과 추방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보호권을 제공하는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청소년 하계 자원봉사 프로젝트

-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뉴욕시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봉사활동과 배움을 통해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공공보건복지 >

① Advocacy

- 다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뉴욕시에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며, 의료보험 개혁법 및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인 의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② 여성 건강 프로그램

- 퀸즈 암서비스 프로그램 및 퀸즈 New York Presbyterian 병원과 협력하여 한인여성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검진 등을 지원

③ 건강보험 상담

- 개인, 가족, 자영업자들에게 건강보험 시장을 통해 보험 가입, 메디케이드, 차일드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험 등의 신청을 지원

④ 만성질환(당뇨병, 심장질환 등)

- 만성질환 및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B형간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약 처방, 동행 서비스, 건강보험 상담 등을 진행

<노인사회봉사고용 프로그램(SCESP)>

- 영어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규직 혹은 시간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간동안 생활보조금지원 및 법률 상담 등 그 외 각종 사회복지혜택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신건강클리닉>

-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인종 차별,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초기검진 및 정신감정, 심리상담치료, 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시사점 및 소감

- KCS는 미국에서 이민 1세대의 피, 땀 어린 노력으로 타지에서 한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2세, 3세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힘을 합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 특히, KCS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미국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 뿐 아니라 지역 내 소수민족의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이민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생활하고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 KCS는 헌신적인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하에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이슬방울 하나, 고인빛물이 샘을 만들고 시내를 이루듯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한인사회의 거름이 되어 후대들이 그 열매를 거둘 것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미국 내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음.

○ 기관방문 사진



3.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 기관개요

-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 버지니아 주(州) 북동쪽에 있는 카운티로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1,116,89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의 행정 중심지이자 가장 큰 도시로 지명은 캐머런(Cameron)의 제6대 영주였던 페어팩스(Thomas Fairfax)경의 이름에서 유래
- 주민들 중 72.91%가 백인, 8.83%가 흑인, 0.26%가 아메리칸 원주민, 13.00% 아시아인, 0.07% 태평양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페어팩스카운티의 평균 가계 소득은 \$111,079이며, 빈곤 비율은 5.8%정도임

○ 주요사업

-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① 학대, 방치 또는 착취당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상의 무능력한 성인들을 위해 성인보호 서비스 제공
 - ② 고령자의 가족 및 친척의 자녀를 돌보는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간병인 지원
 - ③ 노인들에게 메디 케어, 메디 케어 파트 D, 건강 보험, 메디 갭 보험 및 장기 간호 보험에 대해 무료보험 상담 제공
 - ④ 식사와 보충제 제공
-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복지 제공
 - ① 학대 또는 방치로 부모로부터 격리된 자녀들을 위한 위탁 보호 및 입양 서비스 제공
 - ② 가족들이 건강한 상호 관계를 구축하고,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및 지원
 - ③ 아동 학대의 위험이 있는 가족을 도와 가족 해체 방지

- 공공지원 및 고용 서비스 제공

- ①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자녀가있는 가난한 가정에 임시 현금 보조를 제공
- ②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식량비 지원
- ③ 일정 기준 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세제지원 및 고용·교육 기회 제공

○ 시사점 및 소감

-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까지 위기가 있는 가정에 있거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홍보가 잘 되어 있었음.
- 이민가족이 많은 Fairfax County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강화와 소통 등 건강한 가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융화시키고, 이후 사회적 문제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기관방문 사진



4. 미 연방 보건복지부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기관개요

- HHS는 모든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주된 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부서임.
- HHS에는 8개의 미국 공중 보건서비스 기관과 3개의 휴먼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1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강 및 인적 서비스를 관리, 미국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 중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E)는 빈곤한 가정을 위한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 건강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 주요사업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 빈곤 가정 임시 지원 제도 운영

- 개요

- ① 1996년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이었던 AFDC를 폐지하고 한시적 지원 제도인 TANF 도입(1997년 7월 시행)
- ② 부양가족이 있는 빈곤가정에 현금급여를 지원
- ③ 고용을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급여 기간을 제한하며 근로의 의무를 부여하여 빈곤가정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인

- 목적

- 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취업 준비, 취업과 결혼을 통해 빈곤 부모의 의존성 종결
- ③ 혼외 임신 방지 및 감소
- ④ 양부모 가정의 형성과 유지 독려

- 주요내용

- ① Block grant(포괄적 보조금) 방식 사용 :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포괄적 예산으로 지급하며 수급 요건, 지원금액, 실제 운영은 주 정부에서 광범위한 재량권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② 지원기간 제한 : 최대 60개월
- ③ 자활지원형 제도 : 부여된 근로의무 미이행 시 지원 제재
- ④ 탈수급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의료지원(Medicaid) 등 지원

- 운영현황

- ① 예산규모 : 약 173억달러 (※ 주 정부 자체 조달)
- ② 수급자 수 : 월 평균 1.92백만 가구로 점차 감소 추세
- ③ 지원내역 : 현금지원(24.6%), 아동보호(16.9%), 교육·직업훈련(6.7%) 등
- ④ 부정수급 방지 노력

- 운영방법 : 복지부에서 총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주정부는 TANF 운영과 관련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시사점 및 소감

-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및 포괄적 예산을 제공하고 주정부에서 운영 재량권을 갖고 운영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긍정적인 일정 부분을 흡수하여 복지제도가 유연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 한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복지제도 운영과 비교 시 제도가 잘 구축되고 있다고 보았음
- 다만, 미국의 TANF나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두 탈빈곤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작용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을 유지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도구가 아닌 탈수급을 위한 도움단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

하면서도 강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선진국의 주요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주 복지제도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뜻깊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와 공통점·차이점을 생각해보고 향후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음

○ 기관방문 사진



5. 캐나다 온타리오주정부 지역사회서비스부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ONTARIO)

○ 기관소개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지역사회복지부는 노숙자, 가정 폭력, 배우자 지원, 입양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 주택을 다루는 복지,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봉사를 담당
- Ontario Works(ow),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Universal Child Care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요 사업

- 생계비보조 지원금(Ontario Works: OW) : Ontario Works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담당 복지사가 인터뷰를 거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 결정에 따라 보조금의 내역이 결정
- 장애연금(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DSP) :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2017.6월기준 ODSP는 356,097 케이스에 수혜자가 490,242명이며 그중 78%가 1인가구이며 53%가 여성, 47%가 남성임, 신청자격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 자신기준 독거장애인은 \$40,000, 부부장애인은 \$50,000이하,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12개월간 최대 \$10,000가 지원됨
- 자녀 세금 혜택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주권자 이상, 또는 Work Permit을 받고 18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면서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보조금 액수는 가족의 총수입과 자녀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됨

- Universal Child Care :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온타리오 주의 자녀 보조금으로 모든 가정의 6세 이하 자녀에게 매 달 100불씩 지급되는데 위에서 말한 자녀세금혜택(CCTB)을 받는 가정이면 자동으로 지급
- Ontario Child Care Supplement for Working Families :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자격이 되는 가족에게 신청서를 보내줌
- 탁아 보조 지원금(Subsidized Child Care) : 탁아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격은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일을 하거나 학업 또는 특별한 사유로 아이를 탁아시설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면 신청가능
- 노인연금 (Old Age Security: OAS) : 65세 이상이며 이민 후 10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노인에게 지급하며,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노인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 정부에서 보조하는 최저생계 보조금으로 노인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
- 배우자 보조금(Spouse Allowance) : 노인연금과 GIS를 받는 저소득 노인의 배우자이거나 노인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노인연금을 신청할 연령이 안 된 60세~64세까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 은퇴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은퇴시기인 65세 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은퇴보험으로 특별한 경우엔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약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혜택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출산, 양육, 질병, 등으로 휴직해야 할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현재 고용주에게 ROE(Record of Employment)를 받아 4주 이내에 신청
- FREE DENTAL CARE :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사적인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18세 이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토론토에 살고 있어야함, 서비스 내용으로는 치아검사 및 충치치료, 발치(拔齒) 및 청소, 실런트(Sealants), 틀니(부분적 유료)제작, 신경치료, 예방교육 등
- 주택보조 프로그램(Housing) : 매달 렌트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증명이 되면 가계 총 수입의 3분의 1만 렌트비로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
- 약값 보조 혜택 (Ontario Drug Benefits: ODB) : 65세 이상 노인, 장기보호 환자 등이 적은 비용으로 처방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 트릴리움 약값 보조 프로그램 (Trillium Drug Program) : 약값 지출이 가족의 수입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사람들에게 약값을 보조
- 학자금 융자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OSAP) :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학생에게 낮은 이율로 교육비 및 생활비를 대출

○ 시사점 및 소감

- 캐나다는 사회복지 선진국답게 자녀양육, 실업과 빈곤, 의료 보험,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특히 잘 구축되어 있었으며, 연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외에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비보조 지원금(Ontario Works: OW)의 경우 단순히 생계비 지급 뿐 아니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및 탁아소, 베이비시터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
- 또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만큼 공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수급을 금지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고 매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음.
-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기간(10년 이상) 캐나다 거주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년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비 및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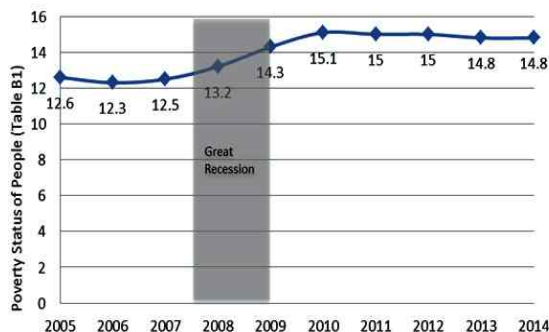
○ 기관방문 사진



I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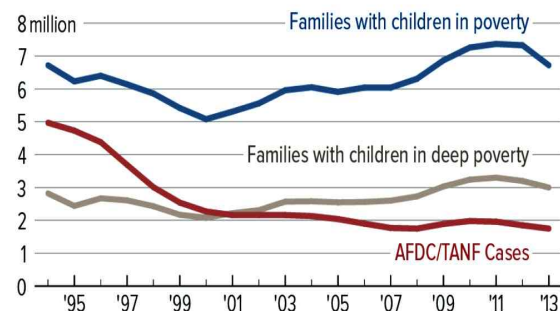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나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국가 정책과 상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제도 확산 촉진 필요
 - 다만, 타 제도 훼손 및 유사·중복사업 난립을 방지하면서 지자체 특성과 중앙사업과의 정합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근로 능력자의 급여 의존성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에 조기복귀 시키기 위하여, 구직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직업 거절시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관리체계를 운영
 -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근로연계를 중심으로 한 탈수급·탈빈곤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적 정서 및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의 결과임
 -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미국 빈곤율 변화 추이 >



출처 : DeNavas-Walt & Proctor(2015).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U.S. Census Bureau

< TANF 수급자 및 빈곤가정 추이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y. Chart Book: TANF at 19. April 8, 2015 Revised August 20, 2015

- 한편,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제도의 지원 확대보다는 다른 제도들과의 유기적인 조합·연계를 통해 빈곤율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를 강화하여 탈수급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그리고 각종 사회서비스 및 지자체 공공부조 제도 간의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필요성 검토 필요
-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공공부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 선정 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재결정 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체계로 이뤄져 있음
 - 미국·캐나다 모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 소득·재산 조사의 정확성·신속성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동화 확대 필요
 - 공적자료 연계 확대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 업무 담당자의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된 판정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추진
 - 매월 수집 가능한 정보는 상시확인조사 실시 전 매번 최신화하고, 원천정보의 회신주기를 매월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확인조사 확대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등 적정수급 관리 강화

- 미국의 한인봉사센터 및 각 지방정부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체계 도입 필요

< community care 개요 >

- (주요내용) 시설 입주 대신 자택에서의 재가서비스 제공
- (목적) 시설 생활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증세(hospitalism) 방지, 대상자의 활동 능력과 가족(전문가)의 지원 능력 활용 등
- (제도) “시장원리의 채택, 지방정부에 서비스 제공책임 이양, care management 체계의 구축, 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의미
- (주요 대상)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장애인 등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지원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는 사례 多
- 시설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시설거주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와 역량개발을 도외시하는 상황
- 탈시설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를 통해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공공·민간·자발적 부문이 주거, 의료,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 필요
- 민·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 모든 복지대상자에게 균등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현행 공공-민간 정보 교류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운영 기반 조성
- * 정보공유 및 활용 강화를 위한 민·관 복지서비스 자원정보 공유DB 구축 및 쌍방향 공유체계의 구현으로 복지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이번 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로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복지제도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미국과 캐나다 모두 개인 또는 가구의 위기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앞으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욕구를 정부차원에서 계속 감당하는 것은 한계에 달할 것이므로,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통하여 주민과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더욱 부여함으로써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가 구성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임
- 긴급한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공공 부조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다만, 미국의 경우처럼 고용연계 복지를 통한 탈수급이 탈빈곤 및 분배지표를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정합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